

영등포구의회
제149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2009. 10. 26.



行 政 委 員 會

(專 門 委 員)

檢 討 報 告 書

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■ 개정이유

- 2009년 5월 8일 『평생교육법』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신규 조항 추가 및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■ 주요내용

-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함
-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정함
- 안 제 3조 제 1항을 신설하여 모든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함
- 안 제4조에는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참여자 및 학습 단체에 대하여 무료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
-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에는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과 유관기관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함

-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 구역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
- 안 제17조에 성인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함
- 안 제18조에는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 기관 및 대학,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
- 안 제19조에 평생학습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함

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는 평생학습협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영등포구의원, 영등포구의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, 학계, 평생학습 전문가,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

-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는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 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

● **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**

「평생교육법」 제5조에서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, 제16조에는 평생교육 기관의 설치 운영,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,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같은 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는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9. 10. 26.

보고자 : 권 오 운

관 계 법 령

■ 평생교육법

제5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) ① 시·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·군·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시·군·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시·군·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, 위원은 시·군·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, 평생교육 전문가,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④ 시·군·구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 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
2.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 (시·군·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·운영 등) ① 시·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